

2026년 변리사 1차 시험 디자인보호법 강사평 및 정답/해설

- A형 기준 -

강사평

정오를 판단하기 어려운 지문 또는 다섯 개의 지문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까다로운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복잡한 법리보다는 법조문을 확인하는 수준의 문제와 지문이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2026년 변리사 1차 시험 디자인보호법 난이도는 **中 또는 中下** 정도입니다.

애매한 문제 및 지문, 정답 및 해설의 오류 등이 있다면, 편히 연락주세요. wk@hupat.com

수고하셨습니다.

월비스 변리사학원 디자인보호법 변리사 김웅 드림

2026-1.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 ②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않더라도 디자인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그 밖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 ③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면 디자인등록 거절 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디자인등록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제48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을 하여야 한다.
- ⑤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정답) ②

해설)

- ① 제4조 제2항. ② 제4조 제1항. 피성년후견인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그 밖의 절차를 밟을 수 없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 ③ 제7조. ④ 제64조 제1항. ⑤ 제104조.

2026-2. 디자인보호법령상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당사자가 절차를 밟을 능력을 상실한 경우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디자인에 관한 절차는 중지된다. 다만, 절차를 밟을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係屬) 중일 때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가 이전되면 그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속행(續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보호법 제47조(절차의 보정)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한 경우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심판관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판장은 결정으로 장애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⑤ 디자인보호법 제24조(수계신청) 제4항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명령을 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른 기간에 수계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에 수계한 것으로 본다.

정답) ②

해설)

- ① 제22조 제2호. “중지”가 아니라 “중단”이다. ②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31조. 옳은 지문이다. ③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3개월”이 아니라 “2개월”이다. ④ 제25조 제1항.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중지된다. 즉, 심판장의 결정은 필요하지 않다. ⑤ 제24조 제5항. 디자인보호법 제24조(수계신청) 제4항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명령을 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른 기간에 수계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수계한 것으로 본다.

2026-3.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디자인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디자인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추상적 모티브만으로는 부족하고, 물품에 창작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② 독립하여 거래대상이 될 수 없는 물품의 부분일지라도 거래대상이 될 수 있는 전체물품의 부분디자인으로는 등록 가능하다.
- ③ 고흥화장분과 같이 고흥화된 분상물의 집합은 그 집합단위로서 그 형태를 갖춘 경우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 ④ 화상은 기기(器機)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하여 물품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 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유체동산이어야 하므로, 조립가옥과 같이 최종적으로 토지에 정착해서 부동산이 되는 것은 비록 유통 과정에서 동산으로 취급되더라도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⑤

해설)

- ① 디자인과 물품의 불가분성의 원칙에 의거 옳은 지문이다. ② 부분디자인의 취지에 부합한다(제2조 제1호 괄호). ③ 구체성과 유체성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므로, 디자인으로 인정된다. ④ 화상의 정의에 부합한다(제2조 제1호 괄호). ⑤ 유통 과정에서 동산으로 취급될 경우(반복생산성과 운반가능성이 있는 경우) 물품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

2026-4. 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동출원의 경우 대표자가 선정되어 있지 않다면 각자가 모두를 대표하여 보정할 수 있다.
- ② 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은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가 도달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 ③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명칭이 동일물품 외의 물품으로 보정되는 경우 최초 제출한 도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단순한 착오나 오기를 정정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도 요지변경으로 본다.
- ④ 도면에 관한 보정이 최초의 도면에 표현된 물품의 외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정도라도 형상이나 모양을 변경하는 것은 요지변경에 해당한다.
- ⑤ 최초 출원서 및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분디자인 출원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을 특정하는 기재를 삭제하는 보정은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①

해설)

① 보정은 출원인의 이익을 위한 절차이므로, 각자가 모두를 대표할 수 있다 (제13조 제1항). 따라서 옳은 지문이다. ② 제48조 제4항 제1호. “도달”이 아니라 “발송”이다. ③ 단순한 착오나 오기를 정정하더라도 최초 출원디자인의 요지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요지변경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④ 물품의 외관에 거의 영향이 없는 경미한 정도의 보정은 최초 출원디자인의 요지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요지변경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⑤ 부분디자인출원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에 대해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예를 들어, 실선 부분)”을 특정하는 기재를 삭제하는 보정은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과 그 이외의 변경이 생기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요지변경에 해당한다.

2026-5. 부분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은 물품의 부분디자인으로, 화상의 부분은 화상의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
- ② 부분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전체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에 관한 판단기준에 따르되, 전체에서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의 기능 및 용도, 위치, 크기,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③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이 온전히 표현되어 있지는 않으나 해당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디자이너가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의 위치, 크기, 범위를 충분히 도출할 수 있는 정도라면 구체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④ 2 이상의 물품이 한 별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1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으나 부분디자인으로는 등록받을 수 없다.
- ⑤ 물리적으로 분리된 2 이상의 부분이 형태적 또는 기능적으로 일체성이 인정되어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부분디자인등록출원은 각각의 부분으로 분할하여 출원할 수 없다.

정답) ④

해설)

- ① 제2조 제1호 괄호 및 제2호의2. 화면디자인은 부분디자인을 전제로 하고, 화상은 전체디자인 또는 부분디자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등록받을 수 있다. ②
- ③ 심사기준과 동일. ④ 한 별의 물품의 디자인은 2 이상의 물품의 조합으로서 전체디자인뿐만 아니라 그 부분디자인도 등록받을 수 있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 ⑤ 물리적으로 분리된 2 이상의 부분이 형태적 또는 기능적으로 일체성이 인정되면, 1디자인으로 취급되는바 분할출원을 할 수 없다(제50조 제1항 제1호).

2026-6.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국내에서 공지되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라도 디자인보호법 제55조(정보 제공)에 따른 정보 및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없다.
- (ㄴ)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없다.
- (ㄷ)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결정등본이 이의신청인에게 송달된 경우라도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그 이의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ㄹ)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기각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ㅁ) 누구든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① ㄱ, ㄷ ② ㄴ,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정답) ②

해설)

(ㄱ) 제62조 제5항.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제3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거나 제46조제1항·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ㄴ) 국제등록공개 전에 이미 물품류는 확정되었기 때문에 제48조 제3항의 보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제186조 제2항).(○) (ㄷ) 제75조 제1항. ①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제71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의견진술의 통지 또는 제74조 제2항에 따른 결정등본이 송달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ㄹ) 제73조 제6항.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 및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ㅁ) 제68조 제1항 제3호.(○) 따라서, (ㄴ), (ㅁ)이 옳은 지문이다.

2026-7.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그 저작권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 ② 등록디자인이 타인의 특허권과 저촉되어 디자인보호법 제123조(통상실시권 허락의심판)에 따라 허락을 받은 통상실시권은 그 통상실시권자의 해당 디자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과 함께 이전되고 해당 디자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이 소멸되면 함께 소멸된다.
- ③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④ 지식재산처장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65조(디자인등록결정)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⑤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보호법 제44조(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및 제45조(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기산한다.

정답) ⑤

해설)

① 제95조 제3항. ② 제99조 제3항. ③ 제98조 제1항 제2호. ④ 제198조. ⑤ 제91조 제2항.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

2026-8. 디자인권의 이전 및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②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 ③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다.
- ④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이전하려면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 ⑤ 디자인보호법 제39조(공동출원)를 위반하여 디자인등록이 된 경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법원에 디자인권의 지분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지분을 이전할 때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⑤

해설)

① 제96조 제3항. ② 제96조 제4항. ③ 제96조 제5항. ④ 제96조 제6항. ⑤ 제96조의2 제2항.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을 이전할 수 있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

2026-9.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자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디자인보호법 제113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디자인보호법 제113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에 따른 침해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함에 있어서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디자인보호법 제43조(비밀디자인) 제1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법원은 고의나 과실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하여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⑤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이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익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정답) ③

해설)

- ① 제113조 제3항. ② 제113조 제1항.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즉, 고의나 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③ 제116조 제1항. “본다”가 아니고 “추정한다”이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 ④ 제117조. ⑤ 제115조 제3항.

2026-10.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39조(공동출원)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그 디자인등록을 등록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 ②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무효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③ 무권리자라는 사유로 디자인등록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고 그 정당한 권리자가 무효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무효로 된 등록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시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 ④ 디자인권자가 디자인등록된 후 디자인보호법 제27조(외국인의 권리능력)에 따라 디자인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디자인등록이 조약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디자인권은 그 무효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⑤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보호법 제42조(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에 위반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으나, 착오로 등록된 경우라도 무효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정답) ③

해설)

- ① 제121조 제1항 제1호. ② 제121조 제1항 후단. ③ 제45조. “3개월”이 아니라 “30일”이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 ④ 제121조 제3항. ⑤ 제62조 제1항 및 제121조 제1항.